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등록원부 관리방법을 기존의 수기방식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항공기 측면사진을 전자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3-5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3-811호

2013년 8월 19일 카이로에서 김영소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와 Ziad Bahaa-Aldin 이집트 부총리 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이집트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3년 10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배전자동화 무상원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배전자동화 무상원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